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	보고서명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제도 개선 방안
	문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02-3771-0899, hyhwang@kcmi.re.kr)

-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개인투자자 수가 '18년 556만 명에서 '24년 1,410만 명(총 인구 대비 28%)으로 급증했으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결집이 가능해졌고 '24, '2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사례가 나타남
 - 스톱워드십 코드 채택 기관 증가('17년 16개사 → '25년 247개사)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발한 활동으로 주주제안 건수도 증가('20년 26개사 59개 안건 → '25년 42개사 121개 안건)

- '25년 하반기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등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고, 일반주주의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 실현을 위해 주주총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주주가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우리 기업문화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독립이사 선임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및 의결권 제한 강화,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모두 주주총회 개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주주총회 관련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일반주주 권익 강화가 가능

-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집중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주총회 관련 안건 공시 시기도 짧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들이 회사의 결산서류와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12월 결산법인의 96.4%가 3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특히

64.7%인 1,672개사가 3영업일에 집중적으로 개최

- 법에서 정한 최소 기한에 맞춰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2주 전 소집공고(유가증권시장 67.6%, 코스닥시장 90.8%), 1주 전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시장 97.1%, 코스닥시장 92.3%), 1주 전 감사보고서(유가증권시장 87.8%, 코스닥시장 89.7%)를 공시
- OECD 자료에 따르면, 사전통지 기간이 22일 이상인 국가는 39%, 15~21일이 51%, 15일 미만은 한국을 포함해 10%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 안건 관련 자료가 1주 전에 통보되어 가장 짧음
- 주주총회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이 주주총회 3주 전 안건 관련 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포함)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

○ 주주총회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연도 말을 의결권 기준일로 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실제 주주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모든 상장회사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부결'이라고만 공시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주주총회 직후에 찬반 비율까지 정확히 공시하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는 연도 말(결산일) = 의결권 기준일 =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관행이 있어왔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89.8%인 74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69.6%인 1,223개사가 12월 31일을 의결권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축하여 실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도 여전히 사업연도 말을 기준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상 형식적 절차 개선을 넘어 실제 배당기준일 설정 관행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유가증권시장 44.9%(364개사), 코스닥시장 43.7%(722개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지정하도록 함

- 그러나 2025년 배당을 실시한 회사 기준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61.5%(346개사), 코스닥시장 90.9%(549개사)는 사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했고, 특히 유가증권시장 67개사, 코스닥시장 177개사는 정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함

○ 주주들에게 제시되는 배당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당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보장과 주주제안권 보장을 위해 6주 전 배당 공시 제도 도입 필요

-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중 30.6%(248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65.6%(1,048개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주들은 그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음

- 배당 결정 공시도 늦어서 주주제안 기한인 6주 전에 정확한 배당 정보를 알기 어렵고, 배당 결정 기관도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나뉘어 있어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하기 어려움

- 6주 전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배당정책, 배당 여부, 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 배당가능이익 한도, 배당 금액 등 배당 관련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주주제안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 권한이 클수록 이사는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는데,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권한이 약하므로 보수 결의 내용 및 보수 공시 구체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권한이 해외 주요국 대비 낮는데, 한도만 승인하고 있고 승인받은 한도 대비 실지급률이 평균 50% 미만이라 실효성이 낮음

-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하되, 확정 급여액, 상여금 금액과 산정 방법, 주식보상 상한, 기타소득 한도 및 내용 등을 구분하여 승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소득세법상 기준이 아닌 주식보상이나 해당 연도 퇴직금 적립액 등 실제 보수 성격의 보상이 모두 반영되도록 하고, 등기/미등기, 상근/비상근을 정확히 표기하여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계열회사 보수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함